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13년 1월 1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함(안 제3조, 부칙)
- 「식품산업진흥법」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‘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’ 관련 인용조문 정리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,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하고,
- 「식품산업진흥법」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“지역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”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
「식품산업진흥법」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“지역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”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